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나5189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나5189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가단22190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최민성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변론 종결 2020. 9. 24.

판결 선고 2020. 11. 19.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가단22190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02,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주장

① 피고가 보험설계사로서 관여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회사들이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받은 보험료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수수료 상당액을 환수당하면서 대납보험료 공제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대납보험료 상당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피해 보험사들에게 수수료 상당의 피해액을 변제했음을 이유로 한 구상청구를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5년의 상사시효 또는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③ 원고는 E,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를 기획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단지 도구로 이용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공범자간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사용자인 원고가 피용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① 주장 피고가 E, D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보험가입 승낙을 받아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보험금을 대납하고 보험사들로부터 보험모집수당을 받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해 보험사인 (주)I, (주)J, (주)K이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 상당 손해액을 보험대리점인 원고에게 지급할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의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각각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보험계약체결 대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계약체결 대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해 보험사에게 관련 보험계약의 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했을 뿐, 원고가 피해 보험사들에게 위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보험 계약자 명의로 대납한 보험료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에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으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외에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청구원인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참조), 피고가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주장하였고 원고가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소멸시효기간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③ 주장 원고가 E,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를 기획한 공동불법행위자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촉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상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영환

판사강문희

판사김현성